

—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년 12월 20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0년 12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2000년 12월 22일

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도시건설국장 천 동 성

나. 제안이유

- 현행 하수도요금이 처리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물관리종합대책에 의하여 2001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
- '99. 4월 국무총리 주재「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」의 연도별 하수도 요금 현실화 목표를 확정에 부응
- 기채상환 재원 및 낙동강 횡단 오수관 중설된 하수도 사업비 재원확보
- 사용료의 현실화로 공기업특별회계 독립채산성 유지와 하수도 민원 해소를 위한 노후관 교체 등 투자재원 확보
- 하수도법에 의한 과태료 규정 및 포상금 지급기준 및 배수중지 기준을 추가하고, 하수도 배수설비준공검사 등의 절차를 조례에서 규칙으로 이동

다. 주요내용

- 하수도요금의 조정 : 현행 요금수준에서 평균 66.7% 인상 조정
- 건축물의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으로 규정
-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 추가기준 설정
- 권리승계의무 삭제
- 공공하수도의 훼손자의 과태료 부과기준 및 배수중지기준 추가
- 부정사용자의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기준 추가

라. 참고사항

- 하수도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4조의2,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9조
- 하수도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6조, 시행규칙 제11조, 제32조, 제38조
- 하수도법 제41조, 제42조 및 시행령 제24조, 제44조
- 지방공기업법 제22조(요금조정), 공기업법시행령 제5조
- 지방자치법 제130조, 제132조
- 지방재정법 제84조
- 지방세법 제19조,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12조, 제3장 체납처분
-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및 의결(2000. 11. 29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윤 구

- 이 개정조례(안)은 하수도사용료 요금의 인상조정과 조례에서 규정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등의 절차를 규칙으로 규정하고 하수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를 세분화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으로써
- 본 개정 조례안은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, 다만 신설코자 하는 **제26조 과태료**가 상위 법령인 하수도법시행령에서는 징수절차만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, 과태료 부과사항은 위임됨이 없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 “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”에 배치된다고 판단되며

- 하수도 사용료를 현행 요금수준에서 **평균 66.7% 인상조정**하여 공기업특별회계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고 노후관 교체등 하수도 사업비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나 이 경우 시민에게 다소의 경제적 부담을 주게되는 사항이므로, 하수도 요금의 조정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채산성 악화와 환경보존의 투자재원 확보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인상의 불가피성, 시민의 경제적 부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가 요망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 의결